간호법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3

발의연월일: 2021. 3. 25.

발 의 자:서정숙·한기호·서일준

하영제・이양수・조수진

정진석 · 김태흠 · 엄태영

서병수 • 조태용 • 박덕흠

하태경 • 류성걸 • 강대식

김예지 · 김미애 · 이철규

임이자 • 이달곤 • 김태호

송석준 • 유의동 • 정점식

최연숙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최형두 • 백종헌 • 권성동

조해진 · 김영식 · 구자근

의원(33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,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, 돌봄·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,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「의료법」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

·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,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.

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,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, 간호 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,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함(안 제4조).
- 다.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(안 제5조).
- 라.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

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 격인정을 받아야 함(안 제9조).

- 마.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,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·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,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(안 제13조).
- 바.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, 간호사도 면 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.
- 사.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,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 가기재·수정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19조).
- 아.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(안 제23조).
- 자.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,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됨(안

제24조부터 제27조까지).

- 차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28조).
- 카.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·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·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.
- 타.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면허증을 다른
 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,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간호업무를 하는
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(안 제32조).
- 파.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,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하거나,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·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(안 제33조).

간호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간호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 게 제공하고 간호에 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간호사"란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받고 제1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전문간호사"란 제9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고 제1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간호조무사"란 제10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고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,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의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1. 「학교보건법」제14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보건교사(간호사

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)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및 응급처치

- 2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19조에 따라 보건진 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
- 3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 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2장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등

제1절 면허와 자격

- 제5조(간호사 면허)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(이하 "평가인증기구" 라 한다)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 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을 졸업한 사람
 - 2.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
- 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)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 사 면허를 받은 사람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.
- 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 없다.
 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- 3. 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
 - 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 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,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관리법」,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약사법」,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

-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제7조(간호사 국가시험) ① 간호사 국가시험(이하 "국가시험"이라 한다)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응시자격의 제한)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 -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- 제9조(전문간호사 자격인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- 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
-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자격 시험, 자격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)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 - 1.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 다) 또는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라 한다)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 육을 이수한 사람

- 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 정을 이수한 사람
- 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(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)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6.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·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·자격인정,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간호조무사 준용규정)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,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,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하며, 이 경우 "면허"는 "자격"으로, "면허증"은 "자격증"으로 본다.
- 제12조(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,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,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별로 따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업무범위

- 제13조(간호사 업무)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.
 - 1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
 - 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
 - 3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・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

- 과 수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
- 4.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
- 제14조(전문간호사의 업무) ① 전문간호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간호조무사의 업무) ① 간호조무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수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절 권리와 의무

제16조(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) 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제13 조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(이하 "간호업무"라 한다)를 할 수 없으며,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

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.
- 1.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
- 2.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하여 간호업무를 하는 자
- 3.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
- ②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③ 간호사는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면 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- 제17조(간호거부 금지 등) ① 간호사는 간호업무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.
 - ② 간호사는 응급환자에게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대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) ① 간호사는 대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같은 목적을 위한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.

- ② 간호사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 서 알게 된 태아의 성(性)을 임부, 임부의 가족, 그 밖의 다른 사람 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간호기록부 작성 등) ①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 - ② 간호사는 간호기록부(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, 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·수정된 간호기록부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보건복지부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③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추가기재·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간호기록부의 열람 및 송부 등에 대하여는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.
 - 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존·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· 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.
- 제20조(전자의무기록 작성 등) ① 간호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간호 기록부를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(이하 "전자의무기록"이라 한다)로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 -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

탐지하거나 누출 •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·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간호사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·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정보 누설 금지) 간호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간호업무, 제19조제2항에 따른 간호기록부 보존업무,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「의료법」 제21조에 따른 간호기록의 열람·사본 교부업무 및 이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·보관·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- 제22조(보수교육) ① 간호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수(補修)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제23조(실태 등의 신고)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간호사 단체

- 제24조(중앙회와 지부)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를 설립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,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.
 -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, 시·군·구(자치구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⑤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 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.
- ⑦ 중앙회는 제34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유리위원회를 둔다.
- 8 윤리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25조(설립 허가 등)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- 제26조(협조의무)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감독)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4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

- 제28조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) ①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 하지 아니하고 간호인력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(이하 이 조에서 "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"이라 한다)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병원급 의료기관"이라 한다)은 간호·간 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"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인력, 시설,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.
 - ④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·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

- 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·확대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
 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·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
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
 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지역별,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
 - 2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
 - 3.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
 - 4.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
 - 5.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·방식에 따

- 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감독

- 제30조(지도와 명령)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 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(危害)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으면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- 제31조(보고와 업무 검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, 시설 또는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

령으로 정한다.

- 제32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2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
 - 3.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 - 4. 「의료법」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, 제1항제2호·제4호 또는 제6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.
- 제33조(자격정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
 - 1. 간호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
- 2.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 호업무를 한 때
- 3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간호업무를 하게 한 때
- 4. 제18조를 위반한 경우
- 5. 제19조제3항에 따른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·수정한 때
- 6. 관련 서류를 위·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
- 7. 「의료법」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
- 8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및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제2호를 위반한 간호사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(제1항제3호·제5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)이지나면 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사유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46

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제34조(중앙회의 자격정지처분 요구 등) 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33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·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35조(행정처분의 기준)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36조(경비보조 등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·중앙회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, 운영 경비, 조사·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37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수수료)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

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

- 제3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장 벌칙

- 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업무를 한 사람
 - 2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
 - 3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
 - 4.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

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• 수정한 사람

- 2.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. 다만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
- ③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 등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
- 2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사람
- 3.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간호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
- 4.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간 호업무를 한 사람
- 제4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

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42조(과태료)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과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호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「의료법」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,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. 제3조(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- 제4조(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의료법」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

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6조(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의료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에 그에 해당하

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의료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의료법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간호사를"을 "「간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목 의"를 "「간호법」 제13조 각 호의"로 하며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제4조제5항 본문 중 "제80조에"를 "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"로 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"제7조"를 "「간호법」 제5조"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"를 "국가시험과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"를 "제5조 및 제6조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"를 "제5조 및 제6조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료인의 종별로"를

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를 구분하여"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제80조에"를 "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에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의료인이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, "조산 또는 간호업무나"를 "조산업무나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, "간호기록부, 그 밖의"를 "그 밖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료인이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는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 중 "의료인이나"를 각각 "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또는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료인에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에"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, "또는 간호사 명칭이나"를 "명칭이나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는"을 "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, "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간호사회"를 "한의사회 및 조산사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는"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의료인은"을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

는"으로 한다.

제40조제2항 본문 중 "진료기록부등을"을 "진료기록부등 및 「간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·보존하고 있는 간호기록부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진료기록부등의"를 "진료기록부등 또는 간호기록부"로 한다.

제58조의2제3항제1호 중 "의료인 단체 및"을 "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,"로, "의료기관단체에서"를 "의료기관단체 및「간호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회에서"로 한다.

제60조의3을 삭제한다.

제61조제1항 전단 중 "조산기록부·간호기록부 등"을 "조산기록부 등"으로 한다.

제66조제4항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 한다.

제66조의2 중 "의료인이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가"로 한다.

제78조 · 제80조 ·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5조제1항 중 "의료인의"를 "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및 조산사의"로 한다.

제92조제3항제3호 중 "진료기록부등을"을 "진료기록부등 및 간호기록부를"로 한다.